

사립대학의 기록관 설치 기준에 관한 법·제도 개선 방안 연구

A Study on the Legal Institutional Improvement Measures for Standards Governing the Establishment of Archives at Private Universities

김 현 정 (Hyunjung Kim)*

배 성 중 (Sungjung Bae)**

초 록

본 연구의 목적은 고등교육기관의 기록관 설치·운영 현황을 분석하고 사립대학을 중심으로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국가기록원의 「주요통계연보」를 바탕으로 고등교육기관 설립 현황, 고등교육기관 기록관 설치 현황,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배치 현황 등의 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고등교육법」과 「사립학교법」에서 규정한 고등교육기관의 범위와 최근 제정된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을 통해 향후 사립대학의 환경적 변화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고등교육기관은 국립학교 대비 사립학교가 많고 기록관 설치 대상 역시 사립학교가 많았다. 사립대학의 기록관 설치율 및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배치율이 매우 낮고,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전부 개정 이후부터 지금까지 개선되지 않았다는 문제점이 도출되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기록관 설치 기준을 보완하고, 사립대학의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배치율 및 경영위기대학으로 지정된 사립학교의 기록물관리 체계를 조정하고, 고등교육기관의 기록물관리를 총괄·조정하는 별도의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을 설치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ABSTRACT

This study examines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record centers higher education institutions, focusing on private universities, and propose improvement measures. Using data from the National Archives's Major Statistical Yearbook and relevant legislation - including the Higher Education Act, the Private School Act, and the newly enacted Act on Support for the Structural Improvement of Private Universities - the study analyzes institution characterizes, records center statue, and the placement of records managers. The findings show that private universities, though larger in number, have very low installation and staffing rates for records centers, with little progress since the revision of the Public Records Management Act. To address these issues, the study suggests refining establishment criteria, strengthening staffing in private universities, and creating a dedicated archival institution to oversee records management in higher education.

키워드: 대학, 기록관, 공공기록물법, 구조개선법

University, Record Center, Public Records Management Act, Structural Reform Act

* 전북대학교 일반대학원 기록관리학과 박사 수료, 한국사학진흥재단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86love55@hanmail.net) (제1저자)

** 전북대학교 부설 기록관리학교육원 강사(bsj@jnue.kr) (교신저자)

논문접수일자 : 2025년 11월 24일 논문심사일자 : 2025년 12월 4일 게재확정일자 : 2025년 12월 19일
한국비블리아학회지, 36(4): 351-376, 2025. <http://dx.doi.org/10.14699/kbiblia.2025.36.4.351>

※ Copyright © 2025 Korean Biblia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NonCommercial-NoDerivatives 4.0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4.0/>) which permits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at the article is properly cited, the use is non-commercial and no modifications or adaptations are made.

1. 머리말

1.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고등교육기관은 고등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으로,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라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이하 “원격대학”이라 한다), 기술대학, 각종학교를 포함한다. 이들 학교는 국가가 설립·경영하거나 국가가 법인으로 설치하는 국립학교와 지방자치단체가 설립·경영하는 공립학교·시립학교·도립학교 및 학교법인이 설립·경영하는 사립학교로 구분된다. 우리나라의 고등교육기관은 1997년 「고등교육법」 제정을 통해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고, 이후 제도적 변화를 거쳐왔다. 2002년에는 전문대학에 산업인력 수요에 따른 수업연한이 단축되었고, 2007년에는 법학전문대학원제도가 도입되었다. 2008년에는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고등교육기관인 원격대학에 사이버대학이 추가되었으며, 같은 해에는 산업대학을 설치·경영하는 국가 또는 학교법인이 산업대학을 폐지하고 일반대학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었다.

한편, 고등교육기관은 교육·연구·산학협력·행정 운영 등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면서 방대한 양의 기록물을 생산한다. 이 기록물에는 학생의 학적, 교직원 인사, 재정·회계 운영, 교육과 연구성과, 산학협력 자료 등이 포함되며, 이는 법적·행정적 근거 자료일 뿐 아니라 대학의 역사와 정체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러한 기록물을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대학 내 기록

관 설치가 필수적이다.

고등교육기관과 관련하여 눈여겨볼 점은 사립학교의 비중이 매우 크다는 것이다. 2024년 기준으로 총 353개 고등교육기관 중 298개교가 사립학교로 전체의 84.4%를 차지한다(교육부, 2024). 이는 사립학교의 경영에 대한 지대한 관심과 체계적인 관리·감독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그러나 사립학교의 기록관 설치 및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배치율은 국립학교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사립학교가 국립학교에 비해 채용에 대한 의사결정 구조가 상대적으로 단순함에도 불구하고 기록물관리에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또한, 국가기록원의 「주요통계연보」에서는 매년 고등교육기관의 기록관 설치 및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배치 현황을 고시하고 있지만, 사립학교에서 기록관 설치 및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배치가 지연되는 구체적인 사유에 대해서는 충분히 밝혀지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된 심층 연구 또한 부족한 상황이다. 따라서 향후 사립학교의 기록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 학교들이 직면한 대내외적 환경과 제도적 제약을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고등교육기관 중 사립학교를 중심으로 관련 법률과 제도 측면에서 현황을 분석하고 문제점을 도출하며, 이를 바탕으로 사립대학의 기록관 설치를 위한 보다 효과적인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1.2 연구방법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연구절차를 통해 진행되었다. 첫째, 교육부 홈페이지를 통해 입수

한 「고등교육기관 현황」 통계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고등교육기관 유형별 설치 현황과 설립 형태를 확인하였다. 둘째, 국가기록원 홈페이지에서 2020년(2019년 기준)부터 2025년(2024년 기준)까지 「주요통계연보」를 입수하여, 연도별 국공립대학교 및 사립대학교 개황, 연도별 기록관 설치 대상교 수, 연도별 기록관 설치 완료 대상교 수, 연도별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배치 현황 등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교육부 통계자료에 기재된 고등교육기관과 국가기록원 통계자료를 분석하여 고등교육기관 설치 현황에 오류가 있었는지 조사하였다. 셋째, 한국사학진흥재단 폐교대학 종합관리포털에서 2000년부터 2024년까지 폐교된 사립대학의 현황을 입수하여 대학 유형, 대학 규모, 기록관 설치 대상교 수,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배치 현황 등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넷째, 「고등교육법」, 「사립학교법」,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을 분석하였다. 다섯째, 이상의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1.3 선행연구

본 연구와 관련된 선행연구로는 크게 고등교육기관의 기록관 설치에 관한 연구와 고등교육기관의 기록관 운영과 같이 세부적인 기록물관리에 대한 연구로 나눌 수 있다.

먼저 고등교육기관 기록관 설치에 관한 연구로 박형준(2006)은 대학의 설립과 발전부터 대학 운영 과정까지 대학 구성원인 교수, 직원, 학생들에 의해 생산된 자료로서 학사 행정에서 발

생된 자료뿐만 아니라 교수 연구 활동 및 학생의 자치활동 등 다양한 형태로 기록물이 생산되고 있음을 조사하였다. 또한, 국내 대학기록관의 조직 유형을 통해 독립기구형태로 운영되는 유형, 박물관 부속기구로 운영되는 유형, 도서관 부속기구로 운영되는 유형 등으로 구분하였다. 즉, 대학들이 지니는 내적·외적 특성에 따라서 구분되기도 하지만 대학에서 행정부서 책임자의 관심 여부에 따라 조직 유형이 결정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철진(2011)은 대학 내부의 행정기록과 학내 구성원과 관련된 수집기록물의 관리 측면에서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대학이 속해 있는 지역사회의 역사를 보존하고 관련 연구를 발전시키고 대학과 관련된 개인기록, 특정 학문 분야의 역사와 정체성 확보, 사회적으로 중요한 사상, 과거 지식인들의 민주화 운동·노동 운동의 근거지로서 그 역사를 보존하고 공유하기 위해 대학기록관과 대학주제기록관을 함께 설치할 것을 제안하였다.

고등교육기관의 기록물관리를 보다 세부적으로 살펴본 연구로 박혁준(2007)은 대학기록관은 체계적인 기록관리를 통해 대학의 역사와 문화를 전승하여 정체성을 확립하고 조직의 업무효율을 극대화시키는 역할을 하기 위해 이용자 중심의 기록정보서비스가 필요하므로 이용자 중심의 기록정보서비스 방안을 조사하였다. 조사 결과, 이용자 세분화를 통해 이용자 집단을 분석, 이용자 집단 선별, 이용자 집단을 만족시킬 서비스 개발 등의 방안을 제시하였다.

김현지(2009)는 대학기록관의 웹사이트에서 제공되는 기록정보서비스를 대상으로 서비스의 범주와 내용을 파악하고, 평가하였다. 분석 결

과, 기록관 안내는 대체로 잘 이루어지고 있었으나 소장기록 목록 제공, 참고질의서비스 등은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박희선(2019)은 대학기록관의 소장기록물 중심의 전시 운영과 홍보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이를 통해 대학 구성원의 특정 주제에 관한 관심을 파악할 수 있으며, 나아가 대학의 역사와 정체성을 알림으로써 대학 설립 목적의 형성에도 기여할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동시에 대학기록관이 대학 구성원들에게 충분히 알려지지 않았다는 현실적 한계도 지적하였다. 같은 맥락에서, 조민정(2024)은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 이후에 기록 보호 및 관리가 대학 교원과 직원의 의무 사항으로 규정되었음을 강조하면서, 대학 구성원의 인식 개선을 위한 방안을 제안하였다. 구체적으로는 구성원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홍보 주제 선정, 정기 기획 코너를 통한 시기별 SNS 게시물 게시, 마스크트를 활용한 관심 유도, 소셜미디어 플랫폼의 적극 활용 등을 제안하였다.

이상의 선행연구들은 주로 대학기록관 혹은 대학주제기록관의 현황을 분석함으로써 국내 대학기록관의 전반적인 상황을 파악하는데 기여하였고, 기록정보서비스와 같이 세부적인 기록물 활용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특정 업무 개선에 도움을 주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대학기록관 설치 및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배치에 대한 연구는 여전히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유일하게 대학기록관의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에 대한 인식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최정민(2018)의 연구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대학기록관의 직속 상급자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대학기록관의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은 행정기록물보다는 역사기록물을 다루는 곳이 많았고, 전문요원 배치 이후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났지만 동시에 대학기록관의 업무가 단순하다는 인식이 존재함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연구자는 대학기록관을 대학 조직내 독립기구로 편성하고, 업무 홍보를 강화하고 대학의 설립 유형에 관계없이 국가기록원으로 부터 충분한 지원 방안을 모색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 연구는 본 연구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나 대학기록관의 상급자들 위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법·제도적 측면에서 고등교육기관의 기록관 설치·운영 방안을 분석한 본 연구와는 차이점이 있다.

2. 고등교육기관 기록관 현황

2.1 기록관 현황

고등교육기관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라 설치되어 전문적 지식 또는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최고 단계의 교육을 담당하고 있다. 이들 기관에는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원격대학), 기술대학, 각종학교가 포함되며, 국립·공립·사립학교를 포함한 총 353개 학교가 운영되고 있다(교육부, 2024). 또한 사립학교는 298개교로 가장 높은 비중(84.4%)을 차지하며, 학생과 교직원 수도 사립학교가 가장 많다.

고등교육기관은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공공기관으로 분류

되며, 기록관을 설치하고,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을 배치하여 기록물관리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표 1>은 국가기록원 「주요통계연보」를 통해 확인한 고등교육기관의 기록관 설치 현황을 나타낸다. 2019년부터 2023년까지 고등교육기관 전체의 기록관 설치 대상이 꾸준히 증가하였으나 2024년에는 다소 감소하였다.

국·공립대학의 경우, 기록관 설치 대상 학교 수가 2021년 이후 비교적 일정하게 유지된 반면, 사립대학은 연도별 변동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2023년 사립대학의 기록관 설치 대상교는 209교이고 2024년 사립대학의 기록관 설치 대상은 204교로 5교가 기록관 설치 대상에서 해제되었는데 한국사학진흥재단 폐교대학 종합관리포털에 따르면 2023년과 2024년에는 사립대학 총 3교가 폐교가 되었고 이에 기록관 설치 대상 대학에서 제외되는 것은 맞으나 2교는 어떠한 이유로 기록관 설치 대상에서 제외되었는지 알 수 없었다. 다만, 2024년 사립대학 총 298교 중 기록관 설치 대상은 204교이고 실제 기록관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곳은 62교로, 30.4%만 설치되어 있다. 기록관 설치 대상은 매년 1천 권 이상 생산(접수)하거나 보존 기록물이 5천권 이상인 경우에 한하며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기록관 의무 설치 대상에서 제

외된다. 반면에 기록관 의무 설치 미대상 대학은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제2항에 따라 대학 총장이 지정하는 부서에서 기록관의 업무를 수행하고 대학 총장이 필요하면 관할 영구기록물관리기관(국가기록원)의 장의 승인을 받아 기록관을 설치할 수 있다.

2.2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배치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고등교육기관이 기록관을 설치할 경우, 전체 정원의 4분의 1이상(4분의 1인 미만일 때에는 1인 이상)을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으로 배치하여야 한다. 그러나 전체 고등교육기관 기준으로 볼 때, 2019년부터 2024년까지 기록관 설치 대상 기관 중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이 배치된 비율은 42.3%에 불과하였다(<표 2> 참조). 국·공립대학은 2019년에는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이 미배치된 곳이 있었으나 2020년 이후로는 대부분 배치가 이루어졌으며, 2명 이상의 전문요원을 둔 대학도 나타나 2024년 기준 배치율은 119%이다. 반면, 사립대학은 2019년부터 2024년까지 기록관 설치 대상 수에 비해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배치가 지속적으로 미흡한 상태이다. 이 기간 평균 배치율은 24.8%에 머

<표 1> 고등교육기관 기록관 설치 현황

(단위: 교)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대상	설치	대상	설치	대상	설치	대상	설치	대상	설치	대상	설치
국·공립대학	51	38	42	15	43	42	43	42	42	41	42	41
사립대학	86	9	96	2	152	32	166	36	209	43	204	62
합계	137	47	138	17	195	74	209	78	251	84	246	103

* 출처: 국가기록원 주요통계연보

〈표 2〉 고등교육기관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배치 현황

(단위: 명)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대상	배치	대상	배치	대상	배치	대상	배치	대상	배치	대상	배치
국·공립대학	51	42	42	43	43	42	43	42	42	45	42	50
사립대학	86	22	96	28	152	32	166	36	209	43	204	62
합계	137	64	138	71	195	74	209	78	251	88	246	112

* 출처: 국가기록원 주요통계연보

물렸으며, 2024년에도 30.4%에 불과해 약 3분의 2의 기관에서 전문요원이 배치되지 않은 상태이다. 그러나 국가기록원은 홈페이지에 고등교육기관 중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을 배치한 대학 수만 공개하고 있기 때문에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배치가 완료된 대학명은 알 수 없으나 기록관 설치 대상 대학명은 공개하고 있다.

〈표 2〉의 사립대학의 기록관 설치 대상교를 중심으로 교육부의 대학알리미에서 조회한 대학 운영 현황을 확인하였다. 대학알리미는 학생, 교원, 연구·산학협력, 예·결산, 교육여건 등 14개 분야 65개 항목 103개 세부 항목을 공개하고 있으며 대학의 설립일, 대학 수, 학생 정원, 교원 정원을 근거로 하여 대학 규모를 중심으로 통계를 제공하고 있다. 국가기록원 고시

기준 기록관 설치 대학의 대학알리미에서 조회한 결과 대학 설립일은 1990년~2000년대 설치된 대학의 수가 63교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으로 1970년~1980년에 설립된 대학, 1950년~1960년대에 설립된 대학, 1930년대~1940년대에 설립된 대학, 2010년~2020년대에 설립된 대학, 1890년대~1900년대와 1910년~1920년대에 설립된 대학 순이었다. 이때 2010년~2020년대 설립된 대학 중 7교는 통폐합으로 교명이 변경되거나 전문대학에서 4년제로 승격된 대학이었고 실제 신규로 신설된 대학은 3교로 주안대학원대학교, 한국복지사이버대학교, 한국승강기대학교이었다(〈표 3〉 참조).

기록관 설치 및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배치 대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학생 및 교원의 정

〈표 3〉 국가기록원 고시 기록관 설치 및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배치 대상교 현황(설립일 기준)

(단위: 교, (): %)

대학 설립일	대학 수
1890년 ~ 1900년대	2(1.1)
1910년 ~ 1920년대	2(1.1)
1930년 ~ 1940년대	14(7.9)
1950년 ~ 1960년대	36(20.3)
1970년 ~ 1980년대	50(28.3)
1990년 ~ 2000년대	63(35.6)
2010년 ~ 2020년대	10(5.7)
합계	177(100)

* 출처: 교육부 대학알리미, 국가기록원 관할 기록관 변동내역 고시문(중복 기재된 대학은 삭제함)

원 등을 근거로 하여 생산·보유 기록물을 추정하거나 학과 수를 확인하여 기록관 설치 및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배치 의무 학교임을 살펴볼 수 있다. 국가기록원 고시에 따라 사립대학의 기록관 설치 대상이자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배치 대상 대학의 학생 정원은 <표 4>와 같다. 학생 정원 1,001명~3천 명인 대학은 49교로 기록관 의무 설치 대상교이자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배치 대상교로 가장 많이 지정되어 있었고 그다음으로 학생 정원 3,001명~5천 명인 대학, 학생 정원 1천 명 이하인 대학과 5,001명~7천 명인 대학, 학생 정원 7,001명~9천 명인 대학과 9,001명~11,000명인 대학, 학생 정원 11,001명~13,000명인 대학과 13,001명~15,000명인 대학, 학생 정원 15,001명~17,000명인 대학, 학생 정원 17,001명~19,000명인 대학, 학생 정원 19,001명~2만 명인 대학 순이었다. 그러나 학생 정원 5천명 이하인 대학에서 기록관 설치 대상으로 절반 이상 지정되어 있음을 보이고 있는

데 학생 정원 11,001명 이상 대학보다 7.9배 지정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국가기록원 고시 중 국립대학 전체에 대해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을 배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대학교의 경우 교육부의 대학알리미에서는 학생 정원 500명 이하인 곳이 있고 학생 정원 1천 명이 되지 않는 곳은 11곳에 달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록관 의무 설치 대상교이자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의무 배치 대상교이다. 이를 고려하여 학생 정원 기준으로 기록관 설치 대상교 지정과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배치 기준을 적용한다면 전체 사립대학의 85.6%(255교)는 기록관 설치 의무 대상교이자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의무 배치 대상이 됨을 시사한다(교육부, 대학알리미).

국가기록원 고시에 따라 사립대학의 기록관 설치 대상이자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배치 대상 대학의 교원 정원은 <표 5>와 같다. 교원 정원 200명 이하인 대학은 96교로 기록관 의무 설치

<표 4> 국가기록원 고시 기록관 설치 및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배치 대상교 현황(학생정원 기준)
(단위: 교 (): %)

학생 정원	대학 수
1,000명 이하	25(14.1)
1,001명 ~ 3,000명	49(27.7)
3,001명 ~ 5,000명	36(20.3)
5,001명 ~ 7,000명	25(14.1)
7,001명 ~ 9,000명	11(6.2)
9,001명 ~ 11,000명	11(6.2)
11,001명 ~ 13,000명	6(3.4)
13,001명 ~ 15,000명	6(3.4)
15,001명 ~ 17,000명	4(2.3)
17,001명 ~ 19,000명	3(1.7)
19,001명 ~ 21,000명	1(0.6)
합계	177(100)

* 출처: 교육부 대학알리미, 국가기록원 관할 기록관 변동내역 고시문(중복 기재된 대학은 삭제함)

〈표 5〉 국가기록원 고시 기록관 설치 및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배치 대상교 현황(교원정원 기준)
(단위: 교 ():%)

교원 정원	대학 수
200명 이하	96(54.2)
201명 ~ 400명	43(24.3)
401명 ~ 600명	10(5.8)
601명 ~ 800명	11(6.2)
801명 ~ 1,000명	6(3.4)
1,001명 ~ 1,200명	5(2.8)
1,201명 ~ 1,400명	2(1.1)
1,401명 ~ 1,600명	2(1.1)
1,601명 ~ 1,800명	2(1.1)
합계	177(100)

* 출처: 교육부 대학알리미, 국가기록원 관할 기록관 변동내역 고시문(중복 기재된 대학은 삭제함)

대상교이자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배치 대상교로 가장 많이 지정되어 있었고 그다음으로 교원 정원 201명~4백 명 이하인 대학, 교원 정원 601명~8백 명 이하인 대학, 교원 정원 401명~6백 명 이하인 대학, 교원 정원 801명~1천 명 이하인 대학, 1,001명~1,200명인 대학, 교원 정원 1,201명~1,400명인 대학과 1,401명~1,600명인 대학 및 1,601명~1,800명인 대학 순이었다.

이렇게 교원 정원이 낮은 주요한 이유는 「대학설립·운영 규정」 제6조에서 교원 1인당 학생 수로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교원 1인당 학생 수는 계열별로 규정하고 있다. 인문·사회 계열은 교원 1인당 학생 수 25명, 자연과학 계열은 교원 1인당 학생 수 20명, 공학 계열은 교원 1인당 학생 수 20명, 예·체능 계열은 교원 1인당 학생 수 20명, 의학 계열은 교원 1인당 학생 수 8명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겸임교원 및 초빙교원은 4년제 대학의 교원 정원에서 5분의 1, 대학원대학의 경우 교원 정원의 3분의 1, 산업대학과 전문대학 및 각종학교의 경우 교원정원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둘 수 있도록

하였다.

한편 국가기록원 고시 중 국립대학 전체에 대해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을 배치하도록 하고 있다. 교육부의 대학알리미에 따르면 교육대학교를 포함한 총 12교의 경우 교원 정원 200명 이하이며 교원 정원 201명~4백 명이 되지 않는 곳은 12교에 달하며 이를 더하면 국립대학의 57.1%는 교원 정원 4백 명 이하인 대학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록관 의무 설치 대상교이자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의무 배치 대상교이다. 이를 고려하여 국립대학의 교원 정원이 최소 규모인 대학의 교원 정원 수는 56명으로, 교원 정원이 최소 56명 이상인 경우 대학 내 기록관 설치 및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배치 의무 기준을 적용한다면 전체 사립대학의 83.9%(250교)는 기록관 설치 의무 대상교이자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의무 배치 대상이 됨을 시사한다(교육부, 대학알리미).

국가기록원 고시에 따라 사립대학의 기록관 설치 대상이자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배치 대상 대학의 학과 수는 〈표 6〉과 같다. 학과 수 20개

〈표 6〉 국가기록원 고시 기록관 설치 및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배치 대상교 현황(학과 수 기준)
(단위: 교 ():%)

학과 수	대학 수
20개 이하	46(26.0)
21개 ~ 40개	46(26.0)
41개 ~ 60개	34(19.2)
61개 ~ 80개	29(16.4)
81개 ~ 100개	14(7.9)
101개 ~ 120개	5(2.8)
121개 ~ 140개	3(1.7)
합계	177(100)

* 출처: 교육부 대학알리미, 국가기록원 관할 기록관 변동내역 고시문(중복 기재된 대학은 삭제함)

이하인 대학과 21개~40개 이하인 대학은 각각 46교로 기록관 의무 설치 대상교이자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배치 대상교로 가장 많이 지정되어 있었고 그다음으로 학과 수 41개~60개 이하인 대학, 학과 수 61개~80개 이하인 대학, 학과 수 81개~100개 이하인 대학, 학과 수 101개~120개 대학, 학과 수 121개~140개 이하인 대학 순이었다.

학과 수는 처리과의 일부에 속하며 처리과는 학과 외에도 단과대학, 대학본부, 부설·부속기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처리과에는 교원 외에도 법적 정원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직원도 포함되어진다.

한편 국가기록원 고시 중 국립대학 전체에 대해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을 배치하도록 하고 있다. 교육부의 대학알리미에 따르면 교육대학교 및 한국체육대학교의 경우 학과 수가 20개 이하였고 한국교원대학교의 경우 학과 수는 25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록관 의무 설치 대상교이자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의무 배치 대상교이다. 이를 고려하면 전체 사립대학의 86.2%(257교)는 기록관 설치 의무 대상교이자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의무 배치 대상이 됨을 시사한다(교육

부, 대학알리미).

〈표 4〉, 〈표 5〉, 〈표 6〉과 같이 학생 정원이 1,000명 이하이거나 교원의 정원이 200명 이하이며 학과 수 20개 이하인 경우라도 기록관 및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을 의무 배치 대상교가 되기도 한다. 국가기록원으로 관할된 사립대학 중 24개 학교의 학생 및 교원 정원은 1천명 미만이지만 기록관 설치 및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배치 기관으로 지정하고 있다. 그러나 인하대학교는 학생 정원은 2023년 5,109명, 2024년 5,058명, 2025년 5,312명으로 정해져 있고 교원 정원은 1,032명으로 정하고 있을지라도 국가기록원 고시문에 따라 기록관 설치 대상에서 제외되고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배치 의무가 없음을 알 수 있었다.

3. 법제도 분석 결과

3.1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은 「교육기본법」 제9조에 근거하여 국가가 설립하거나 국가가 국립대학 법인

으로 설립하는 국립학교, 지방자치단체가 설립·경영하는 공립학교(시립학교·도립학교), 학교법인이 설립·경영하는 사립학교에 적용된다. 이 법은 학교의 종류를 명시하고, 학교의 명칭, 조직 및 필수 시설, 규칙, 재정, 교육의 운영 등 주요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학생의 선발과 교직원의 자격 기준에 대해 기준을 명확히 하고 있다. 그러나 기록관 설치·운영은 해당 조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 다만, 「고등교육법」 제4조, 제6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72조에는 기록물에 관한 사항이 일부 포함되어 있고, 이는 고등교육기관이 스스로 폐지하거나 교육부장관으로부터 폐쇄 명령을 받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7〉 참조).

「고등교육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르면, 고등교육기관이 스스로 폐지할 경우 폐지 사유, 폐지연월일을 기재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재산처리 방법, 학생 처리방법, 그리고 학적부에 대한 처리방법을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또한, 「고등교육법」 제6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에는 교육부장관이 고등교육기관으로부터 3가지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해당 고등교육기관을 폐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교육부장관이 내릴 수 있는 폐쇄 명령의 예로는, 학교의 장이나 설립자·경영자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고등교육법」과 명령을 위반한 경우, 학교의 장이나 설립자·경영자가 같은 사유로 「고등교육법」

〈표 7〉 「고등교육법」 기록물 관련 조문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조(학교의 설립 등) ③ 공립학교나 사립학교의 설립자·경영자가 학교를 폐지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2조(학교설립 등) ④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학교의 폐지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갖추어 교육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폐지사유 2. 폐지연월일 3. 학생 및 학적부의 처리방법 4. 사립학교를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학교 재산의 처리방법
제62조(학교 등의 폐쇄) ① 교육부장관은 학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정상적인 학사운영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학교의 학교법인에 대하여 학교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1. 학교의 장이나 설립자·경영자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過失)로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2. 학교의 장이나 설립자·경영자가 같은 사유로 이 법 또는 그 밖의 교육 관계 법령에 따른 교육부장관의 명령을 3회 이상 위반한 경우 3. 휴가기간을 제외하고 계속하여 3개월 이상 수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② 교육부장관은 제4조제2항에 따른 학교설립인가나 제24조에 따른 분교설치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학교의 명칭을 사용하거나 학생을 모집하여 시설을 사실상 학교의 형태로 운영하는 자에게는 그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제72조(학교의 폐쇄) 학교설립자는 교육부장관이 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의 폐쇄를 명한 때에는 당해 명령을 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재학생과 학교기본재산의 처리사항을 기재한 서류와 학적부를 각각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또는 그 밖의 교육 관계 법령에 따른 교육부장관의 명령을 3회 이상 위반한 경우, 휴가기간을 제외하고 3개월 이상 계속 수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이다. 또한 분교설치인가를 받지 않고 시설을 운영한 경우에도 폐쇄 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본교와 분교를 구분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표 3>에서 고려대학교의 경우에도 본교와 분교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나 국가기록원에서도 본교와 분교에 각각 기록관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최근에는 사법부에 의해 학교법인의 파산 선고로 폐쇄되는 경우도 나타나고 있다.

기록물에 대해서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 72조에 따라 학교의 폐쇄 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재학생과 학교기본재산의 처리상황을 기재한 서류와 학적부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2024년 12월말 기준 고등교육기관의 폐지·폐쇄 사례는 총 22개교에 달한다. 이 중 교육부장관에게 기록물을 제출한 학교는 총 19개교로, 전체의 86.4%를 차지하였다. 이 법률에서는 평생교육시설 학력인정대학을 제외하고 국립·공립·사립대학의 운영과 폐쇄(폐지)에 대한 사항을 나타낸다. 대학에서 생산(접수)한 기록물 중 재학생과 학교기본재산의 처리사항이 기재된 서류와 학적부를 중요 기록물로 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우리나라의 사립대학의 존립과 폐교와 유사한 사례를 겪은 미국은 2017년 기준 고등교육기관은 총 4,298교로, 이 중 비영리 사립대학은 1,687교에 이른다(박재석, 2024). 미국의 「고등교육법」은 「미국연방법전」 제20편 교육 제28장 고등교육 자원 및 학생지원에 수록되어 있고 2년제·4년제와 같은 학사 유형, 대학원 프

로그램, 학자금 대출, 학비보조, 학사일정 및 연방정부 재정보조사업 신청, 의회 보고 사항, 규정과 각종 양식의 배포처, 개인식별번호(PIN)의 사용에 대한 제한, 연구, 학부모 개인정보 수집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대학 내 기록관 설치 및 인력 구성에 대한 관련 조문은 찾아볼 수 없었다. 다음으로 일본의 경우 2021년 4년제 대학(통신제 제외)은 모두 803교로, 이 중 사립대학은 619개로 그 비중은 77%에 이른다(박재석, 2024). 그러나 일본은 「고등교육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영국은 잉글랜드 지역에만 130교의 대학이 있고, 스코틀랜드 18교, 웨일즈 지역 10교, 북아일랜드 4교로, 총 162개 이른다. 이 중 사립대학은 버킹검대학교, 리젠트대학교, 법학 대학교, BPP대학교, 아덴대학교는 사립대학교에 속한다(박재석, 2024). 영국의 「고등교육법」은 잉글랜드 및 웨일즈에 일반교육위원회를 설립, 학생에 대한 보조금, 학생을 위한 대출, 등록금 규정, 평생교육 기금 조성 등의 조문이 있으나 기록관 설치 및 기록물의 관리 및 폐교 시 기록물에 대한 처리와 관련된 조문은 찾아볼 수 없었다.

3.2 사립학교법

「고등교육법」에 고등교육기관의 설립·경영의 유형을 규정하고 있지만, 사립학교에 대해서는 별도의 법률을 통해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사립학교의 자주성을 확보하고 공공성을 높이기 위함이다. 사립학교란 학교법인, 공공단체 외의 법인 또는 그 밖의 사인(私人)이 설치하는 학교를 의미한다. 사립학교의 유형에는, 유아의 교육을 위하여 설립·운영되는 유치원, 초·중

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설립된 초등학교·중학교·고등공민학교·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특수학교·각종학교, 고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설립·운영된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사이버대학(원격대학)·기술대학·각종학교 등이 있다. 최근에는 학교법인에 의해 설립·경영할 수 있는 학교의 형태를 법적으로 명확히 규정되어 있으며, 고등교육기관은 반드시 학교법인이 설립 주체가 되어야 설치할 수 있는 학교로 포함되었다. 「사립학교법」의 주요 내용은 학교법인 설립과 학교의 운영, 학교법인의 해산과 학교의 폐지(폐쇄)에 대한 규정을 담고 있으며, 아울러 학교경영자와 직원에 대한 권리 및 의무에 대해서도 명시하고 있다.

기록관과 관련된 내용은 「사립학교법」 제48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규정되어 있다. 이에 따르면, 학교법인이 해산되거나 고등교육기관을 폐지·폐쇄되는 경우를 대비해 해산된 학교법인 등의 기록물관리 전담기관을 지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현재 한국사학진흥재단이 그 전담기관으로 지정되어 있다. 이 규정은 학교법인의 해산 또는 고등교육기관의 폐교 상황에 한정되어 있으며, 운영 중인 학교법인과 고등교육기관의 기록관 설치에 관한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표 8〉 참조).

기록물과 관련하여 학교법인의 해산, 고등교육기관을 폐지·폐쇄할 경우 해산된 학교법인 등의 기록물관리 전담기관(한국사학진흥재단)으로 학교법인의 해산인가, 해산명령 또는 고등교육기관의 폐지인가, 폐쇄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기록물을 제출해야 한다. 기록물 제출 범위는 학적부, 조직·회계·예산

등과 관련된 자료, 그 밖의 문서, 도서, 도면, 시청각물, 전자문서 등으로서 세부 이관 범위는 교육부 고시 「해산된 학교법인 등의 기록물 제출 범위에 관한 고시」로 정하고 있다. 교육부 고시는 입시·수업운영·성적관리 등 학사 관련 기록물, 장학·취업 지원 등 학생 지원에 관한 기록물, 교원 및 직원의 임용·전보·승진·면직·휴직·포상·징계 등 인사 관련 기록물, 학교법인 및 학교의 운영과정에서 발생한 각종 회의록·의사록·업무계획서·보고서 등 조직 운영에 관한 기록물, 학교법인 및 학교의 예산 편성·집행·결산·계약 등 회계 관리에 관한 기록물, 대학 및 법인 운영 관련 각종 제규정 관련 기록물, 소송 및 소청 등 법무에 관한 기록물, 재산의 취득·처분 등 재산 관리 기록물, 건축·공사 등 시설 관리에 관한 기록물,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제출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기록물로 구분된다.

학교법인 해산 및 고등교육기관의 폐지·폐쇄로 기록물을 인계받은 해산된 학교법인 등의 기록물관리 전담기관(한국사학진흥재단)의 역할은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8조제5항에 규정되어 있다. 해당 규정에 따르면, 전담기관은 기록물관리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기록물관리와 관련된 주요 사항을 심의하고, 기록물 분류·폐기·보존·공개·열람 등을 수행한다. 아울러 이러한 세부 사항은 내부 규정에 담아 이행하도록 하고 있었고 해산된 학교법인 등의 기록물관리를 위한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을 별도로 배치하도록 하는 조문과 함께 배치되어 있었다.

그러나 「초·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치된 국립학교는 대통령령인 「국

〈표 8〉 「사립학교법」 기록관 관련 조문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 시행령」
<p>제48조의2(해산된 학교법인 등에 대한 기록물관리) ① 해산된 학교법인과 폐지·폐쇄된 학교에 관하여 효율적인 기록물관리와 소속 임원, 교직원 및 학생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는 학적부, 조직·회계·예산 관련 자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관 중인 기록물을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제34조제2항 또는 제47조에 따라 해산된 학교법인 「고등교육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학교 폐지의 인가를 받은 학교 「고등교육법」 제62조에 따라 학교 폐쇄의 명령을 받은 학교 <p>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기록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한국사학진흥재단법」에 따른 한국사학진흥재단을 전담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p> <p>③ 그 밖에 해산된 학교법인 등의 기록물 이관 및 관리의 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18조(해산된 학교법인 등에 대한 기록물관리) ① 법 제4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학적부, 조직·회계·예산 관련 자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관 중인 기록물”이란 다음 각 호의 기록물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학적부 조직·회계·예산 관련 자료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접수한 문서·도서·대장·카드·도면·시청각물·전자문서 등의 각종 기록물 중에서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기록물 <p>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기록물의 세부 범위는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p> <p>③ 법 제48조의2제1항 각 호의 자는 해당 학교법인의 해산인가·해산명령이나 학교의 폐지인가·폐쇄명령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제1항 각 호의 기록물을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p> <p>④ 교육부장관은 법 제48조의2제2항에 따라 한국사학진흥재단을 전담기관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기록물을 지체 없이 한국사학진흥재단에 이관해야 한다.</p> <p>⑤ 한국사학진흥재단은 제4항에 따라 이관된 기록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내부규정을 마련하여 운영해야 한다. 이 경우 내부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기록물의 관리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기록물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기록물의 분류에 관한 사항 기록물의 보존 기간 및 보존방법에 관한 사항 기록물의 공개, 열람 및 활용에 관한 사항 기록물의 폐기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기록물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립학교 설치령」을 근거로 운영되며, 이를 분석한 결과, 고등교육기관에 한해 대학의 통·폐합에 관한 특례 규정이 마련되어 있었다. 또한, 교육부 고시 「국립대학 통폐합 기준」에는 행정과 학사 운영을 위한 조직체계 기준, 학칙 적용, 학생 및 교직원 보호대책 등이 포함되어 있으나 기록물관리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았다(〈표 9〉 참조).

한편 우리나라와 같이 사립대학의 존립 및 폐교 등 유사한 사례를 겪은 미국과 영국은 사립대학에 대한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지 않으나 일본의 경우 우리나라와 동일하게 「사립학교법」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었다. 일본의 「사립학교법」은 1949년 12월 15일 공포하였고 학교법인 및 사립학교 운영, 이사회·이사 선임 및 해임, 회계감사인, 예산 및

〈표 9〉 「국립학교 설치령」 및 「국립대학 통폐합 기준」 조문 일부

「국립학교 설치령」	「국립대학 통폐합 기준」
<p>제21조(대학 간 통·폐합에 관한 특례) 대학 간 통·폐합에 관하여는 「대학설립·운영 규정」 제2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절차에 따른다.</p>	<p>제3조의2(통합의 절차) ① 통합을 하려는 각 대학의 총장은 공동으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포함하여 교육부장관에게 통·폐합을 신청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대학 통·폐합 신청서(제3조의4, 제4조부터 제7조까지, 제7조의2의 사항에 대한 계획 및 입학정원 조정계획 등 구체적인 통·폐합 계획을 포함하여야 한다) 2. 대학 간 통·폐합 합의서 3. 각 대학 내 의사결정기구(대학별 학칙에서 정한 의사결정 절차에 따라 자문·심의·의결 등을 거쳐야 하는 기구 전체를 말한다) 회의록 사본 4. 각 대학 내·외부 의견수렴 결과 <p>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통·폐합 신청이 있으면 제8조에 따른 국립대학 통·폐합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대학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p> <p>③ 교육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통·폐합 승인을 통보하는 경우 대학의 총장과 협의하여 통합대학의 출범일(이하 “통합 출범일”이라 한다)을 정하고 이를 함께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합 출범일은 통합 승인을 통보한 날이 속한 학년도의 다음 학년도 3월 1일로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통·폐합 심사 과정에서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면 교육부장관과 대학의 총장이 협의하여 다르게 정할 수 있다.</p> <p>④ 제2항에 따라 통합 승인을 통보받은 대학은 통합 출범일 까지 통합대학의 출범을 완료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인 받은 내용에 따라 통·폐합을 이행하기 위해 통·폐합 이행계획을 마련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교육부장관과 이행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통·폐합 이행계획 마련이 지연되는 등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통합 출범일 후 이행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p>

사업 계획, 학교법인 해산에 관한 사항, 기부행위, 평의원회 운영 등을 규정하고 있고 학교법인의 해산사유는 이사회 결의에 의한 결정, 목적 사업의 성공 불가능, 관할 기관의 해산명령 등으로 학교법인을 해산할 수 있으며 학교법인의 청산 및 파산에 대한 사항도 규정하고 있다. 다만 운영중인 사립학교의 기록관 설치나 기록물관리와 관련된 사항과 해산된 학교법인 및 폐교대학에 대한 기록물 인수인계에 대한 규정

은 조문화되어 있지 않았다.

3.3 사립대학 구조개선행법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은 2025년 8월 14일에 제정되었고 2026년 8월 15일에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일반적으로 법률은 시행일만을 명시하는 경우가 많으나 이 법률은 부칙에 유효기간을 설정하여 2035년 12월 31일

까지 한시적으로 효력을 가지도록 하였다. 입법 배경은 학령인구 감소와 사립대학의 재정구조 개선에 있다. 저출산으로 인한 학령인구가 급격히 줄어들면서 2021년을 기점으로 대학 입학 정원이 학력 인구보다 많아지면서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대학이 급증하였다. 동시에 사립대학의 등록금 의존율은 53.5%에 달해 재정적 취약성이 심각한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립대학의 구조조정을 추진함으로써 고등교육의 건전한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 이 법률의 제정 취지이다. 또한, KDI 연구보고서(한성민, 2023)는 대학 입학정원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2040년에는 대부분의 비수도권 사립대학이 존속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은 이러한 위기 가능성을 고려해 예상되는 문제 발생 시점을 약 5년 앞당겨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마련된 정책으로 평가할 수 있다.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 대상 고등교육기관은 「사립학교법」에 따라 설립된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대학을 의미한다. 여기서 대학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과 「평생교육법」에 따라 설치된 전공대학을 포함한다. 이들 기관은 매년 재정진단을 통해 재무상태를 평가받으며, 구조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경영위기대학으로 지정된다. 경영위기대학으로 지정되면 경영자문을 바탕으로 구조개선 이행계획을 수립하여 구조개선을 단행해야 한다. 이행계획에는 보유 자산 처분 또는 재정기여자 확보를 통한 재무구조 개선, 학부·학과 통폐합, 사립대학 간 통폐합, 사립대학 폐교 또는 학교법인 해산 등이 포함된다. 경영위기대학으로 지정되었

더라도 이행계획을 성실히 수행하여 차년도에 재지정되지 않으면 지정에서 해제될 수 있다.

기록관 및 기록물과 관련 사항은 같은 법 제21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학교법인의 해산 또는 사립대학 폐교 시 「사립학교법」 제48조의2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해산된 학교법인 등의 기록물관리 전담기관의 역할은 계속 유지된다. 현재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제정을 앞두고 있으며, 조문별 상세한 사항은 시행령에서 정해질 것으로 예상된다(〈표 10〉 참조). 반면에 사립대학의 기록관 설치 및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배치에서는 앞서 살펴본 「고등교육법」, 「사립학교법」,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 조문에는 폐교 이후에 대한 기록관의 역할과 기록물 인계 기관의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배치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런데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경영위기대학에 경영자문과 같은 컨설팅 기간 동안 경영위기대학에서 제공한 자료를 바탕으로 경영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 사항을 확인함에도 자료의 밀바탕이 되는 기록물관리에 관한 지원이 사전에 하나도 없어서 경영 자문 범위에 기록물관리에 관한 보완점도 함께 제공될 필요가 있다. 운영 중일 때 기록물관리에 관한 지원이 부족하다면 폐교 이후에 누락 기록물을 발견하여 보완해야 하는 점이 있고 기록물을 인계 받는 자가 기록물의 생산, 등록, 분류, 정리 과정에서 누락된 사항을 알기 어렵고 놓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

한편 우리나라와 같이 사립대학의 존립 및 폐교 등 유사한 사례를 겪은 미국은 1960년대부터 대학의 통폐합이나 폐교가 이루어져왔으

〈표 10〉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 기록물 관련 조문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		
<p>제12조(구조개선명령) ① 전담기관의 장은 경영위기대학 또는 해당 학교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부장관에게 구조개선을 명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제10조제6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까지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10조제6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2회 이상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경영위기대학 중 재정위험수준이 한계에 임박하여 회생 가능성이 현저히 낮아 교육기관으로서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사립대학으로서 위원회의 심의 결과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받은 경우 <p>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수 개의 사항을 동시에 명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내용으로 하는 구조개선명령(이하 “구조개선명령”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학생 모집의 정지 사립대학의 폐교 학교법인의 해산과 청산 그 밖에 경영위기대학의 구조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 	<p>제18조(폐교·해산의 절차 등) ① 학교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등교육법」 제4조 및 「사립학교법」 제34조에도 불구하고 이사 정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대학을 폐교하거나 학교법인을 해산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제10조제1항제4호에 따라 구조개선이행계획 중인 대학 	<p>제21조(학생 및 교직원·연구자의 보호) ⑥ 제12조제2항 또는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라 폐교된 사립대학과 해산된 학교법인의 학적부, 조직, 회계·예산 관련 자료 등 기록물의 관리에 대하여는 「사립학교법」 제48조의2를 준용한다.</p>

나 학생 등록률의 감소로 인한 재정 적자가 누적되어 타대학의 통합을 통해 교직원의 고용 승계나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 2015년까지 총 744교의 폐교가 이루어졌고 이 중 사립대학은 693교로 93.1%에 달한다. 미국은 중앙정부 및 주정부에서 대학 재정지원과 정부차원의 평가 인증을 통해 부실

대학을 정리하려 하였으나 법제도를 마련하기 보다는 여전히 대학의 자발적 선택에 맡기고 있다. 또한 일본은 「사립학교법」에 학교법인 해산과 파산 및 폐교에 관련된 규정을 명문화했고 이 법에 근거하여 제도로서 대학의 구조조정을 단행하였으나 제도 시행에서는 사립대학 뿐만 아니라 국립대학을 먼저 구조조정을 단행하였

다는 점이다. 영국의 경우는 대학 평가 체제를 통해 구조조정의 실행하였지만 실제 폐교된 학교는 거의 찾아볼 수 없고 합병이 활발히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박재석, 2024). 위 세 나라의 제도에서도 기록관이나 기록물관리에 대한 사항은 찾아볼 수 없었다.

3.4 공공기록물법

고등교육기관의 기록관 설치와 기록물관리 제도는 1999년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과 2006년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록물법”)에서 시작되었다. 공공기록물법은 국·공립 및 사립 고등교육기관을 공공기관의 정의에 포함시켜 해당 법률을 준수하도록 하였다. 이 법에 따라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은 기록물을 보호·관리할 의무를 지닌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기록물관리에 관한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을 우선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공공기록물법은 공공기관 내 기록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기록관을 설치·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연간 기록물 생산량이 1천권 미만이거나 보존 대상 기록물이 5천권 미만일 경우에는 기록관 설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이로 인해 국가기록원 「주요통계연보」에서 집계한 사립대학 현황과 실제 기록관 설치 대상에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 또한, 국가기록원 「2025년 대학 기록물관리 지침」에 따르면, 연간 생산량과 보존량 기준에 미달하여 기록관 설치 대상이 되지 않은 대학은 기록물관리 담당자를 지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들은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업무를 대신 수행하며,

특히 기록물 평가(폐기) 시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업무를 대신하여 절차에 따라 폐기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그러나 기록관 설치 의무 대상이 아닌 기관에 대한 자체 기록물관리 세부 절차를 확인한 결과, 기록물 생산·등록·분류·정리·이관·평가(폐기)·보존·활용 단계별 업무 가이드는 부재하였고 실제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을 대신하여 할 수 있는 업무에 대한 범위가 현행 법령에서도 모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신 <그림 1>과 같이 기록관 미설치 대상 기관의 경우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을 대신하여 기록물 폐기를 수행해도 되는지에 대해 지침에서 Q&A 형태의 서면 답변이 제공되고 있다. 이 내용은 국가기록원에서 고시한 사립대학의 기록관 미설치 대상교에 대해 기록물관리 업무에 대한 안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뿐더러 사립대학의 기록물관리 업무 소홀로 이어질 수 있다. 예를 들어 폐교된 사립대학 총 22개교 중 대학의 운영 과정에서 기록물관리기준표(기록물분류기준표)를 수립한 학교는 0개교, 기록물 평가(폐기)를 실시한 곳도 전무하였다. 또한 기록관 운영 규정 또는 기록물관리 규정을 제정한 학교도 있으나 실제 조문의 구성은 이전 「사무관리규정」으로, 문서 작성 방법에 치중한 내용들이었다. 그에 반해 학교법인에서는 대학의 기록물과 구분짓지 않고 함께 기록물철을 만들어 관리하고 있어서 폐교대학 기록물철 내에 학교법인 기록물건이 함께 편철되는 경우가 흔하게 나타났다. 이는 공공기록물법에서는 사립대학만 기록관 설치 대상이고 학교법인에서 생산(접수)된 기록물을 공공기록물로 보지 않으나 「고등교육법」과 「사립학교법」에서는 사립대학을 독립적인 기관으로 보지 않고 반드시

2. 공공기록물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라 기록관 설치대상이 아닌 공공기관의 기록물 폐기도 공공기록물 법령에서 정한 평가·폐기절차를 준수해야 하는지?
 ▶ 공공기록물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의 연간 기록물 생산량이 1천권 미만이거나 보존대상 기록물이 5천권 미만인 공공기관은 시행령 제10조제2항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부서에서 기록관의 업무를 수행하며, 시행령 제79조에 따라 별도의 기록물 관리 담당자(기록물관리기관의 종사자)를 지정하여 전문요원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함. 평가·폐기 업무 수행의 경우에도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절차를 거쳐서 폐기를 진행하여야 함

〈그림 1〉 국가기록원 「2025년 대학 기록물관리 지침」 발췌
 (출처: 국가기록원, 2025)

학교법인이 설립되어야 사립대학을 설치할 수 있고 학교법인은 사립대학의 재정을 매년 투입 하므로 상호 간 종속관계에 있으므로 실제 대학 운영 과정에서 학교법인의 기록물과 대학의 기록물을 혼재하여 편철·관리하고 있고 학교법인이 해산될 경우에도 대학 기록물과 함께 국가(교육부)에 제출하도록 하는 등 공공기록물법에서는 학교법인을 공적기관으로 보지 않지만 다른 법에서는 공적기관으로 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 문제점 및 개선방안

이상의 분석을 통해 드러난 고등교육기관의 기록관 설치 기준 및 운영에 대한 문제점을 바탕으로 기록관 설치 기준 유형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기록관 설치 기준을 연간 1천권 이상 기록물을 생산하거나 5천권 이상 기록물을 보존하는 측정 도구 대신 대학의 학생정원, 교원정원, 학과 수 등으로 변경하는 방안이다. 공공기록물법 제정 이후 26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2024년 기준 사립대학의 기록관 설치 비율이 30.4%에 불과하여, 국·공립대학의 설치율

97.6%의 3분의 1수준에도 미치지 못했다. 이는 기록관 설치 기준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사립대학들이 국립대학 보다 학생정원과 교원정원 및 개설 학과 수도 많은 학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록물에 대한 산정 기준과 기록물의 범위를 정확하게 알지 못한 채 국가기록원으로 생산현황통보를 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2년제 A대학은 학교 설립일이 2011년 3월 1일이고 학생정원은 1·2학년 합쳐서 66명, 교원정원은 총 5명이고 하나의 학과만 운영하더라도 국가기록원으로부터 기록관 의무 설치 대상으로 지정되었으며 4년제 B대학은 학교 설립일이 1946년 9월 1일이고 학생정원은 11,819명, 교원정원은 총 889명이고 97개의 학과를 운영 중임에도 국가기록원으로부터 기록관 의무 설치 대상 고시에서 제외되었다. 대학 구성원들이 기록관의 설치·운영과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의무 배치 여부를 알 수 있게 돕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대학의 학생정원, 교원의 법정 정원, 학과 수 등의 측정 기준 변경 및 개선을 고려할 수 있다. 따라서 기록관 설치 여부를 단순히 생산량과 보존량에만 의존하기보다 교육부 대학알리미의 대학별 입학정원을 고려하여 기록관 설치 대상의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유사한 예로 대학의 종류에 따라 대학,

〈표 11〉 학생 및 교원정원 등으로 기록관 설치 기준 변경 관련 신규조문대비표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현행	개정 제안(안)
<p>제10조(기록관의 설치) ① 법 제13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으로서 그 기관 및 소속 기관의 연간 기록물 생산량이 1천권 이상이거나 보존대상 기록물이 5천권 이상인 공공기관을 말한다. 다만, 제6호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는 제외한다)이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을 설치·운영하는 경우(공동 설치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기록관을 따로 두지 않고 그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이 기록관의 업무를 수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및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2. 삭제 3. 삭제 4. 삭제 5. 시·도 6. 시·군·구(지방자치단체인 구를 말한다)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제주자치도에 두는 행정시 7. 시·도 교육청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교육지원청 8.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직할 군기관 9. 육군·해군·공군본부 및 육군·해군·공군 참모총장이 정하는 군 기관 10. 제3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기관 1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국가가 설립·경영하거나 국가가 국립대학 법인으로 설립하는 국립학교 나. 학교법인이 설립·경영하는 사립학교 12. 그 밖에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기록관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지정한 공공기관 <p>② 제1항에 따른 기록관의 설치·운영 대상이 아닌 공공기관은 해당 공공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부서에서 기록관의 업무를 수행한다. 이 경우 공공기관의 장은 필요하면 관할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기록관을 설치할 수 있다.</p>	<p>제10조(기록관의 설치) ① 법 제13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으로서 그 기관 및 소속 기관의 연간 기록물 생산량이 1천권 이상이거나 보존대상 기록물이 5천권 이상인 공공기관을 말한다. 다만, 기록관의 설치·운영 대상이 아닌 공공기관은 해당 공공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부서에서 기록관의 업무를 수행한다. 이 경우 공공기관의 장은 필요하면 관할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기록관을 설치할 수 있다.</p> <p>1. ~ 12. 생략</p> <p>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는 제외한다)이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을 설치·운영하는 경우(공동 설치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기록관을 따로 두지 않고 그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이 기록관의 업무를 수행한다.에 따른 기록관의 설치·운영 대상이 아닌 공공기관은 해당 공공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부서에서 기록관의 업무를 수행한다. 이 경우 공공기관의 장은 필요하면 관할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기록관을 설치할 수 있다.</p>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현행	개정 제안(안)
신설	<p>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은 학생 및 교원정원, 학과 수에 따라 기록관을 달리 설치할 수 있다.</p> <p>④ 생략</p> <p>⑤ 생략</p> <p>⑥ 생략</p> <p>⑦ 생략</p> <p>1. 생략 가. 생략 나. 생략</p> <p>2. 생략</p> <p>⑧ 생략</p>
<p>③ 제1항에 따라 기록관을 설치·운영하여야 하는 공공기관이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특수기록관을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기록관을 따로 두지 아니하고 그 특수기록관이 기록관의 업무를 수행한다.</p> <p>④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공공기관은 필요하면 2개 이상의 기록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p> <p>⑤ 제1항제7호에 따라 기록관을 설치한 공공기관은 기록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할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관할 지역 내에서 기록관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p> <p>⑥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3조제5호에 따른 학교 중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및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각급 학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기록관의 업무를 수행한다.</p> <p>1. 「유아교육법」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학교 가. 국립학교: 관할 중앙행정기관의 기록관(대학·교육대학부설학교의 경우에는 소속 대학·교육대학의 기록관을 말한다) 나. 공·사립학교: 관할 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의 기록관</p> <p>2.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학교: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기관의 기록관</p> <p>⑦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관할 공공기관이 기록관을 새로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를 매년 관보(지방기록물관리기관의 경우에는 공보를 말한다) 또는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 정보통신망에 고시해야 한다.</p>	<p>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은 학생 및 교원정원, 학과 수에 따라 기록관을 달리 설치할 수 있다.</p> <p>④ 생략</p> <p>⑤ 생략</p> <p>⑥ 생략</p> <p>⑦ 생략</p> <p>1. 생략 가. 생략 나. 생략</p> <p>2. 생략</p> <p>⑧ 생략</p>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원격대학), 기술대학, 각종학교로 나누고 대학의 규모에 따라 입학정원이 달라진다. 그러나 이러한 대학의 종류와 입학정원만을 가지고 판단하면 향후에는 입학정원이 과거에 비해 현격히 차이가 생길 수 있다. 따라서 대학의 종류, 대학의 규모(예산 포함), 입학정원, 졸업자 및 퇴직자 등의 누계치를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기록관 설치 여

부를 결정함으로써 대학의 특수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대학은 기록물을 보호하고 관리할 의무를 지니므로 기록관 설치를 통해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기록물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에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3항을 조문을 신설하여 기록관의 설치 기준을 명확하게 하고, 더 나아가 사립대학 규모에 따라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배치 규모 간의 개선을 통해 실효적인

기록물관리를 지향해야 하겠다.

둘째, 학교법인과 사립대학은 부모관계이자 종속관계로, 학교법인에 기록관을 설치하는 방안이다. 그러나 공공기록물법 시행령 제3조 제4호의 내용을 자세히 분석한 결과,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한 법인은 공공기관으로 보아 매년 1천권 이상 생산하거나 5천권 이상 보존할 경우 기록관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다. 2006구합3324 정보비공개결정처분취소 판례(대전지법, 2007)에서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이라 함은 한국은행, 서울대학교병원 등과 같이 개별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이익에 큰 영향을 미치는 해당 법인의 역할이나 기능에 대해 통일적인 규율을 하고 법인의 설립 목적, 사업 및 활동을 당해 법에서 제한하고 있고 소정의 목적이나 사업 이외에 다른 활동을 하는 것은 예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의 법인도 포함하고 있다. 특히 학교법인은 「사립학교법」에 의해 설립 목적과 사업 및 활동을 제한하고 있고 학교법인 외에 사인(使人)이나 다른 형태의 조직이 사립학교를 설치·경영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므로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어 학교법인도 기록관 설치 기준에 부합하면 설치·운영해야 한다. 학교법인은 매년 사립대학에 법인전입금을 지원하고 사립대학의 운영 여부를 결정하며 인력 구성에도 사립대학에서 학교법인으로 제청을 요하는 등 사립대학의 경영·운영 전반을 주도하므로 학교법인에 기록관을 설치하여 사립대학의 기록물을 인수·보존하여 학교법인의 설립부터 사립대학의 설치 및 운영 전반에 대한 기록물간 맥락관계를 형성할 수 있을 것으

로 보인다.

셋째, 사립대학 기록관 설치와 관련하여 보다 심각한 문제는 국가기록원 고시 내 기록관이 설치된 사립대학 중 대학의 규모를 제외하고 학생 및 교원정원과 무관하게 의무 설치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는 대학별로 생산기록물과 보존기록물에 대한 수량을 천차만별로 책정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국가기록원의 관할 기록관 고시를 볼 때, 사립대학의 총 298교 중 유사한 규모의 대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록관 설치 대상이 다름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은 주목할 만하다. 현재 국가기록원에서의 관할 기록관 고시에 대한 대학명 중복 기재 및 통계의 오류를 근거로 한다. 이 통계는 기록관 설치 대상 대학명만 나열되고 있으며, 어떠한 기준으로 대학별 기록관 설치 대상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이 고시에 나열된 대학과 유사한 규모의 대학들은 기록관 설치 의무가 아니게 되어 자체적으로 기록물관리 부서를 지정하여 기록관 역할을 하면 된다. 그러나 위에서 설명한 사례와 같이, 최소 학생정원 66명, 교원정원 5명, 학과 수 1개인 곳도 국가기록원 관할 기록관 의무 설치 대상교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사립대학 총 298교에 기록관을 전부 설치하도록 범위를 재조정하여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의무 배치를 통해 기록물 가치 평가의 적절성이 훼손되고 중요 기록물관리의 부실을 초래하는 상황을 선제적으로 예방을 해야 한다. 그러나 반대로 이 기준에서 정한 범위를 그대로 준수하는 것이 사립대학 중 경영위기대학에 지나치게 무리감을 주는 경우도 있다. 학령인구 감소로 구조조정이 불가피한 사립대학은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채용 자체

가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경우, 학교법인 소속 직원 중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자격을 갖춘 인력이 있다면 해당 사립대학의 기록물관리 업무를 겸직하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또한, 하나의 학교법인이 복수의 사립대학을 운영하는 경우, 기준에 배치된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이 다른 대학의 기록물관리 업무를 겸임하도록 하여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예외적으로 필요하다. 이는 고등교육기관이 반드시 학교법인을 통해 운영된다는 점에서 기록물관리 역시 하나의 조직 체계 안에서 통합적으로 수행될 수 있다는 논리에 근거한다. 반면에 학교법인과 소속 사립대학 모두에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이 부재하고, 객관적으로 경영위기대학에 해당할 정도의 재정난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는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 일반 직원이 제한적으로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는 현재처럼 기록관 설치 대상이 아닌 대학에서 일반 직원이 무자격 상태로 전문요원의 고유 업무를 전담하는 것을 방지하지 않기 위함이다. 학령인구 감소로 지방의 사립대학의 폐교는 가시화된 상황에서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채용만을 고집할 수 없다. 동일 학교법인 또는 자회사 격인 다른 사립대학의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을 우선적으로 활용하되, 불가능할 경우 관할청의 허가를 거쳐 적법하게 대체 인력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유연성을 확보해야 한다.

넷째, 교육부에 사립대학 기록관을 설치하는 방안이다. 「사립학교법」 제4조에 따라 사립대학·산업대학·사이버대학·전문대학·기술대학 및 이들이 준하는 각종학교와 이를 설치·경영하

는 학교법인은 교육부장관의 지도·감독을 받는다. 특히 학교법인을 설립하려는 자는 교육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교육부는 학교법인 이사회 임원의 취임·승인 취소·해임 등을 할 수 있다.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에 대한 매도·증여·교환·용도변경 등을 할 경우에도 교육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사립학교법」 제48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학교법인의 해산과 사립대학이 폐교할 경우에도 기본 재산 관련 서류를 비롯하여 학적부 및 회계서류 등 교육부 고시를 통해 기록물을 교육부로 제출해야 하는 권한을 갖고 있고 올해 제정된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도 학교법인의 경영·운영 상황이나 경영위기대학 지정 여부 등은 교육부장관 소속 사학구조개선심의위원회에서 다루고 있다. 지방교육청에서는 관할 중등 이하 학교에 기록관을 별도로 설치하지 않는다. 따라서 지방교육청(또는 교육지원청)은 기록관을 설치하여 중등 이하 학교의 기록물을 이관·보존·활용하듯이 교육부에 별도로 기록관을 설치하여 사립대학의 기록물을 이관·관리를 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또한 현재 고등교육기관의 대내외적 변화들을 교육부에서 주도하여 정책 마련 및 제도 보완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고등교육기관의 변화 기류에 맞춰 기록물관리 정책 수립, 기록물관리에 관한 지도·감독,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실효적 배치 계획 조성 및 실행,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세부 기록물관리 지원 계획 마련, 경영위기대학에 대한 기록물관리 예외 처리 및 허가 사항 등을 2026년부터 2035년까지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는 점을 고려할 때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즉,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유치원에서 대학까지 폐교가 확산될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 교육기관의 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전사적 기록물관리·지원 체계 주도 및 권한 확장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이 시급하다. 이와 더불어, 관련 법률의 정합성을 확보하여 관리·감독 대상 및 범위를 명확히 하여 상충되는 법률과 제도로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역할과 범위가 축소되지 않도록 하며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배치에 따른 혜택 및 미배치에 따른 제재 방안을 수립하여야 효과성을 담보할 것이다.

5. 맺음말

본 연구는 고등교육기관의 기록관 설치·운영 현황 및 관련 법령을 살펴보고, 사립대학을 중심으로 문제점을 파악하여 개선방안을 아래와 같이 제안하였다. 본 연구에서 밝힌 문제점으로는 첫째, 기록관 설치 여부를 단순히 생산량과 보존량에만 의존하여 사립대학들이 국립대학 보다 학생정원과 교원정원 및 개설 학과 수도 많은 학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록관 설치 대상 대학의 사각지대가 발생됨에 따라 대학 규모(예산 포함), 학생 및 교원정원, 학과 수, 졸업자 및 퇴직자의 누계 등을 토대로 기록관 설치 기준을 재정비하여야 한다. 둘째, 공공 기록물법 공공기관 범위 내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에 학교법인도 포함되므로 학교법인 내 기록관을 설치하여 학교법인 기록물을 포함하여 사립대학의 기록물을 관리하여야 한다. 이는 학교법인은 매년 사립대학에 법인전

입금을 지원하고 사립대학의 운영 여부를 결정하며 인력 구성에도 사립대학에서 학교법인으로 제정을 요하는 등 사립대학의 경영·운영 전반을 주도하므로 학교법인에 기록관을 설치하여 사립대학의 기록물을 인수·보존하여 학교법인의 설립부터 사립대학의 설치 및 운영 전반에 대한 기록물 간 맥락관계를 형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셋째, 사립대학 총 298교에 기록관을 전부 설치하도록 범위를 재조정하여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의무 배치를 통해 기록물 가치 평가의 적절성이 훼손되고 중요기록물관리의 부실을 초래하는 상황을 선제적으로 예방을 해야 한다. 넷째, 지방교육청(또는 교육지원청)은 기록관을 설치하여 중등 이하 학교의 기록물을 이관·보존·활용하듯이 교육부에 별도로 기록관을 설치하여 사립대학의 기록물을 이관·관리를 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고등교육기관의 대내외적 변화들을 교육부에서 주도하여 정책 마련 및 제도 보완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고등교육기관의 변화 기류에 맞춰 기록물관리 정책 수립, 기록물관리에 관한 지도·감독,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실효적 배치 계획 조성 및 실행,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세부 기록물관리 지원 계획 마련, 경영위기대학에 대한 기록물관리 예외 처리 및 허가 사항 등을 2026년부터 2035년까지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는 점을 고려할 때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이상의 논의를 통해, 고등교육기관은 단순한 기록 보존을 넘어 체계적·전문적인 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중요기록물이 역사적, 사회적 자산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본 연구는 그동안 충분히 다루어지지 않았던 고등교육기관의 기록관 설치·운영 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고등교육기관 기록관을 지원하는 영구기록물관리

기관의 법·제도적 기반과 역할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나아가 고등교육기관 기록물관리 지원 체계를 강화할 수 있는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탐구할 필요가 있다.

참 고 문 헌

- 교육부 (2024, 10. 21). 2024년 고등 교육기관 현황. 출처: <https://www.moe.go.kr/boardCnts/viewRenew.do?boardID=337&boardSeq=101290&lev=0&searchType=null&statusYN=W&page=6&s=moe&m=0303&opType=N>
- 국가기록원 (2020). 주요통계연보. 대전: 행정안전부.
- 국가기록원 (2021). 주요통계연보. 대전: 행정안전부.
- 국가기록원 (2022). 주요통계연보. 대전: 행정안전부.
- 국가기록원 (2023). 주요통계연보. 대전: 행정안전부.
- 국가기록원 (2024). 주요통계연보. 대전: 행정안전부.
- 국가기록원 (2025). 대학 기록물관리 지침. 대전: 행정안전부.
- 국가기록원 (2025). 주요통계연보. 대전: 행정안전부.
- 김현지 (2009). 웹을 통한 기록정보서비스 평가모형 개발과 서비스 평가: 대학기록관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명지대학교.
- 박재석 (2023).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에 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서강대학교.
- 박형준 (2006). 대학기록관 설립방안에 관한 연구: 대학도서관과의 협력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목포대학교.
- 박혁준 (2007). 대학기록관의 기록정보서비스 방안. 석사학위논문, 명지대학교.
- 박희선 (2019). 대학기록관의 온라인 전시방안: SNS 기반의 이용자 참여형 전시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한신대학교.
- 법제처 (2011, 03. 18). 영국 고등교육법. 출처: https://world.moleg.go.kr/web/wli/lgsInfoReadPage.do?CTS_SEQ=18616&AST_SEQ=2053&
- 법제처 (2024, 12. 12). 미국 고등교육법. 출처: https://world.moleg.go.kr/web/wli/lgsInfoReadPage.do?CTS_SEQ=47731&AST_SEQ=313&
- 법제처 (2025, 6. 13). 일본 사립학교법. 출처: <https://world.moleg.go.kr/web/wli/lgsInfoReadPag>

e.do?CTS_SEQ=51640&AST_SEQ=157&

- 윤철진 (2011). 대학주제기록관의 효율적 운영방안. 석사학위논문, 명지대학교.
- 조민정 (2024). 소셜미디어를 이용한 대학기록관 홍보 활성화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 최정민 (2018). 대학기록관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에 대한 인식연구: 업무 상급자 면담을 통하여. 석사학위논문, 명지대학교.
- 한성민 (2023). 지역대학의 구조적 전환과 발전 방안. 정책연구시리즈, 한국개발연구원.

• 국문 참고자료의 영어 표기

(English translation / romanization of references originally written in Korean)

- Cho, Minjung (2024). A Study on Promoting University Archives through Social Media.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 Choi, Jungmin (2018). A Study of University Archivists Recognition: Work Supervisor through interviews. Master's thesis, Myongji University.
- Han, Sungmin (2023). Structural Transformation and Development Strategies for Local Universities. Korea Development Institute, South Korea.
- Kim, Hyunjee (2009). Evaluation Model Development for Archival Information Services over the Web and the Service Evaluation: Focused on University Archives. Master's thesis, Myongji University.
- Ministry of education (2024, 10, 21). Status of university education institutions in 2024. Available: <https://www.moe.go.kr/boardCnts/viewRenew.do?boardID=337&boardSeq=101290&lev=0&searchType=null&statusYN=W&page=6&s=moe&m=0303&opType=N>
-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2011, 03, 18). Further and Higher Education Act 1992. Available: https://world.moleg.go.kr/web/wli/lgsInfoReadPage.do?CTS_SEQ=18616&AST_SEQ=2053&
-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2024, 12, 12). Higher education resources and student assistance. Available: https://world.moleg.go.kr/web/wli/lgsInfoReadPage.do?CTS_SEQ=47731&AST_SEQ=313&
-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2025, 6, 13). Private Schools Act. Available: https://world.moleg.go.kr/web/wli/lgsInfoReadPage.do?CTS_SEQ=51640&AST_SEQ=157&
- National Archives of Korea (2020). Major Statistical Yearbook.
- National Archives of Korea (2021). Major Statistical Yearbook.

- National Archives of Korea (2022). Major Statistical Yearbook.
- National Archives of Korea (2023). Major Statistical Yearbook.
- National Archives of Korea (2024). Major Statistical Yearbook.
- National Archives of Korea (2025). Guidelines for Managing University Archvies.
- National Archives of Korea (2025). Major Statistical Yearbook.
- Park, Huiseon (2019). A Study on the Online Exhibition of University Archives: Focused on SNS Based User Participation Exhibition. Master's thesis, Hanshin University.
- Park, Hyukjun (2007). A Study on Reference Service of the College and University Archives. Master's thesis, Myongji University, South Korea.
- Park, Hyungjoon (2006). A Study on the Establishment Plan of University Archives: Focused on the Cooperation between of University Archives and University Library. Master's thesis, Mokpo National University.
- Park, Jaeserk (2023). Study on the Implementation of Laws Supporting Structural Improvements in Private Universities. Doctoral dissertation, Sogang University.
- Yoon, Cheoljin (2011). Efficient Administrative Plan for Special Subject Repository in Universities. Master's thesis, Myongji University.